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정일	2024. 3. 1
	개정일	
	개정차수	차
	담당부서	관리과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는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종사자”는 본교 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3. “협력업체”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단, 안전에 영향이 없는 단순업무 및 잡무는 제외한다.
4. “안전교육”은 고압가스 냉동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종사자가 가스관련 안전기준을 이해시키고 안전관리상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 및 협력업체 직원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 내의 냉동제조시설, 장비 및 인원(종사자 및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 4조 (안전관리방법) 안전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본교의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방법은 고법 제3조의2를 준용한다.
2. 그 밖의 안전관리 사항은 관할 관공서, 지자체의 지침을 참고한다.
3. 본교는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조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조직은 고법 제11조를 준용하며, 관할 관공서 및 지자체의 지침을 참고한다.

제 6조 (선임기준)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고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제 7조 (안전관리자별 직무) 안전관리자별 직무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소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2.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며 사업소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부총괄 관리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를 보좌하며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모든 활동을 통제, 감독하고 또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4.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냉동기 운전, 조작, 점검을 한다.
-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시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 가서는 아니 된다.

제 8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에 해당하는 안전 관리자가 직무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1. 해당 안전관리자가 휴가,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해당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으로 동시에 선임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의 부재중 상황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 9조 (점검 및 검사) 점검 및 검사는 고법을 준용하며, 관할 관공서 및 지자체의 지침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유지보수) 다음 각 호에 따라 본교의 냉동제조시설을 유지보수를 시행한다.

1. 고법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 및 기술기준을 참고한다.
2. 보수 및 수리를 할 경우 고법 시행규칙 수리, 청소 및 철거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제11조 (사고예방) ① 사고예방을 위해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를 운영한다.

- ② 출입금지표시 및 주의표시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
- ③ 누구든 사고위험요인을 발견하면, 본교 관리과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2조 (사고발생 조치) ① 누구든 사고 발생을 목격했다면, 소방서(119)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안전관리조직은 사고발생시 지휘체계에 따라 복구에 최선을 다한다.

제13조 (보험가입) ① 고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냉동제조시설 운영 시 보험가입을 한다.

- ② 보험가입만료일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예산을 확보한다.

제14조 (관리감독) 냉동기 관련 기계실 출입문에는 ‘출입금지’ 혹은 ‘관계자외 출입금지’ 등의 문구를 부착하여 허용인원 외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제15조 (안전교육)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는 월 1회 냉동기 운전자를 대상으로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본교에서 실시하는 소방교육 및 훈련 참여를 독려하여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제16조 (안전관리위반 행위자에 대한 조치) 안전관리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본교의 인사행정규정을 따른다.

제17조 (휴지 및 폐지 관련한 안전관리) 고법 제7조에 준용하며 관할 관공서, 지자체에 신고하여 해당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